

하남시 고시 제2025-98호

하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감일공공주택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790-549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5. 6. 25.
하 남 시 장

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교통시설

1) 도로

☐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3	28	3	국지도로	70	중로1-2	감이동 397-4	보행자 우선도로	-	-	

☐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(결정) 사유
-	소로3-28	• 신설 : 폭원 3m, 연장 70m	• 인근 캐슬렉스(골프장) 진출입 통행차량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공공지 20호 일부를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

나) 공간시설

1) 공공공지

☐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0	공공공지	감이동 499 일원	5,171.5	감) 229	4,942.5	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808호 (2010.11.15.)	

☐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(결정) 사유
20	공공공지	• 면적 변경 : 5,171.5㎡ → 4,942.5㎡	• 인근 캐슬렉스(골프장) 진출입 통행차량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공공지 20호 일부를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
 5.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차형태·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
 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